

경기 용인지역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

- 4개 농장에서 발생 - 전두주 살처분, 매몰
 - 인근농장 발생시 초유전 예방접종 해야

-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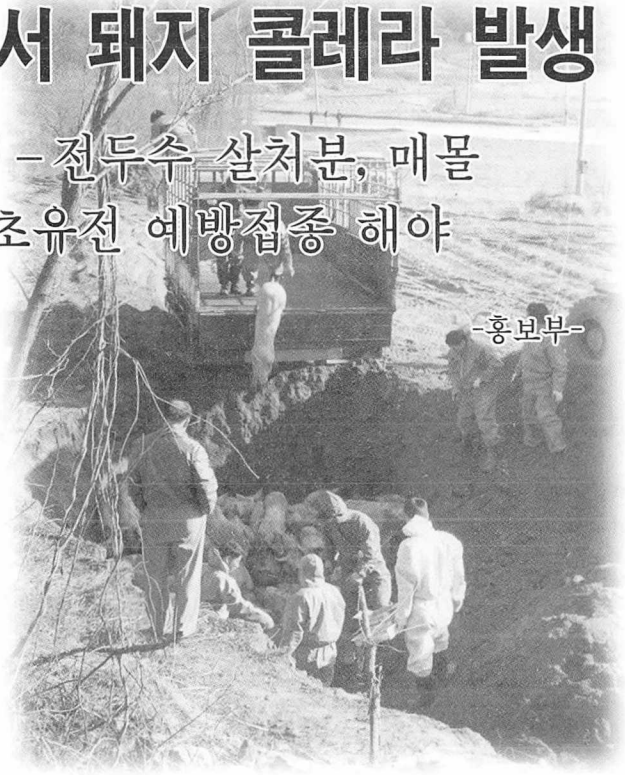
▶ 지난 2월 27일 오후 용인 포곡면 신원리 마성농장(1,000두 사육)의 돼지를 살처분·매몰 시키고 있다. 27일, 28일 매몰된 1천57두(준원농장, 마성농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경기도는 1억원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 난 2월 26일과 3월 2일 용인시 소재 4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발생농장 감염의심돼지 전 두수를 살처분, 매몰했다고 농림부가 지난 3월 발표하였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26일 경기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준원농장(대표 정용원)과 포곡면 신원리 마성농장(대표 조성삼)의 돼지 696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96두가 폐사하였다. 또한 뒤이어 3월 2일에는 용인시 포곡면 유운1리 이영상씨 농장과 정명훈씨 농장에서 각각 635두와 222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229두와 29두가 폐사했다.

이에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 및

▶포곡면 신원리 마성농장의 돼지를 살처분·매몰시키기 위해 상차시키고 있다.



경기도내 방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이동제한 및 혈청검사 확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농장 감염 의심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 매몰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3월 5일부터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종료될 때까지 용인지역 돼지 콜레라 특별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반은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용인지역의 370여 전 양돈장 25만두에 대해서 임상조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농림부가 발표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돼지의 도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 개정법에 의거, 발생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혈청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미접종 판정시 해당농가에 과태료 처분도 병행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 발생농장 반경 2km 이내의 돼지에 대한 일본 수출검역을 40일간 중지토록 조치하였다. 경기도 용인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농림부가 2000년까지 국내에서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해 돼지의 도축을 제한하기로 한 직후에 터진 상황이라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7일에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마성농장의 경우 출입구에 돼지콜레라 발생사실 및 검역 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았고, 방역띠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예방접종 추진과 함께 발병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보완대책 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방역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원농장은 자돈을 입식받아 위탁사육하는 농가로, 삼죽면 울곡농장에서 자돈을 입식받았으며, 울곡농장 위탁사육 농장은 주원농장 외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

〈사진제공 : 농수축산신문〉



▲용인시 포곡면 유운2리 진입로에 걸려 있는 돼지콜레라 근절 플랑카드

